

**중앙자활센터 -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- 시(한국)지역자활센터협회
문화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(안)**

『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』와 『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』 및 『사단법인 한국 지역자활센터협회』는 “기관 간 협력사업”을 통해 우리사회의 문화격차해소와 자 활촉진 및 일자리창출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『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』와 『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』 및 『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』(이하 ‘중앙자활센터’, ‘조합’, ‘협회’라 한다)가 “기관 간 협력사업”에 관한 각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 이고 성공적인 협력관계 및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.

제2조(기본원칙) 협약당사자들은 상대기관의 규정을 존중하고, 신의성실의 원칙 에 입각하여 이 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세부사 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
제3조(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) 협약당사자는 우리사회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 한 영화관 설치 촉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 호 협력한다.

- ① 중앙자활센터는 “기관 간 협력사업”의 원활한 사업 정착 및 운영개선을 위 한 자활사업을 개발·점검하고 협력사업의 확산과 홍보를 위해 노력한다.
- ② 조합은 “작은영화관 설치·운영사업”을 함에 있어 협회의 회원기관인 지역 자활센터를 우선하여 작은영화관의 직원채용, 청소, 방역, 자활생산품 판매 및 시설 공사기회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한다.
- ③ 협회는 협약관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자활센터의 발굴, 작은영화관 관련 사업추진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구축, 사업설명과 교육 및 컨설팅, 사업모니터링, 협약당사자간 추가 연계사업개발 업무 등을 추진한다.
- ④ 협약당사자들은 기타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, 정보, 자료의 교류 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.

제4조(협조 창구 마련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운영) 협약당사자들은 협약에 의 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각 전담자를 지정하고 필요 시 각 협약당사 자의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협약기간) 이 협약서는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 간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“작은영화관”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

한다. 협약당사자 일방이 협약기간 만료 이전에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상대기관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협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통해 상호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. 단, 법령이나 정부기관 혹은 재판상의 요구에 따른 공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7조(기타사항)

-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협약변경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라 문서로 처리한다.
- ② 본 협약과 관련된 대외홍보 및 언론발표 등은 상호 합의하에 진행한다.
- ③ 중앙자활센터, 조합, 협회는 상기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중앙자활센터, 조합, 협회는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⑤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한다.
- ⑥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며 1년 단위로 성과를 점검한다.

제8조(준거법 및 관할법원) 본 협약은 대한민국법에 의해 해석되고 규율되며, 협약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해서 해결하되,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이 협약에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4월 16일

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

작은영화관
사회적협동조합

사단법인
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

원 장 이 병 학

이사장 김 선 태

회 장 박 준 흥

이 병 학

김 선 태

박 준 흥